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양성평등기본법」 반영
-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 정비, 중복 조항 삭제, 용어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
- 다.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중복 조항 삭제,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9조)
- 나.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제22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예산담당, 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89호

가) 예고기간: 2019. 9. 6. ~ 2019. 9. 2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4. 본 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군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1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수강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

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사업 등
2.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3.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시 참가자의 차량임차료, 식비·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장

3. (생략)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생략)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생략)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현행과 같음)

4. 군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능) -----  
-----.

1.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현행과 같음)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군수는 수강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다.

1.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강 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수강신청자가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생략)

<신설>

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사업 등
2.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3.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시 참가자의 차량임차료, 식비·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

##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문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